



가

[ 2017.10.12] [ 2017 - 49 , 2017.10.12, ]

( ) 044 - 202 - 7728

1

1 ( ) 「 」 3 2 1 7  
가 .

2 ( ) 「 」 23 .

3 ( )

1. " . " 「 」 ( " " ) 15 16 .

2. " . " 가 15 16 . 가  
「 」 2

3. " . " 「 」 ( " " ) 4  
( 10 11 ) 18  
1 3 .

, , 「

」 .

2

가

4 ( 가 ) 1 1 12 31

가 .

5 ( 가 ) 가 1 , 가 가

12

가

1 1

가

, 1 2 가 .

6 ( 가 ) 가 가 ,

2 .

가 1 3

, .

7 ( 가) (

. )가 ( " " )

가

8 ( 가)

$$\text{정규직 비율(\%)} = \frac{\text{정규직 안전·보건관리자 수}}{\text{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수}} \times 100$$

가 . 1 1 12 31 .

6 .

가 「 가 」 25

「 」 15

9 ( 가) 가 . 가

. 가 가 .

10 (가 ) 가 (KOSHA 18001)

가

1. (KOSHA 18001) : 5

2. (KOSHA 18001) 가 : 2

가 가 12 31 .

11 ( ) 가 ( 가  
) 2 .

12 ( 가 ) 가 가 .  
가 .

1 . .

1.

2. 2

3. ( )

가

가

13 ( ) 가  
가 가

14 ( ) 「 . 」  
2018 1 1 3 ( 3 12 31 )

< 2017 - 49 ,2017.10.12 >

1 ( ) .

[별표 1]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구 분	평가지표	배점 범위	비 고
공통 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40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나.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40	상시 안전보건활동 촉진
	다. 안전보건 조직	20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5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계		105	

※ 비고: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2. 제1호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건설업체

구 분	평가지표	배점 범위	비 고
공통 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	50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나. 안전보건 조직	50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5	사전 안전보건활동 촉진
계		105	

※ 비고: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별표 2]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세부 평가기준

### 1. 공통항목

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평가 항목	배점 (40)	확인서류
○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1회  ※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5점 인정	25	제출서류 없음
○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1.5점/1회  ※ 사업주가 월 1개소 이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시에도 월 1회만 인정 (매월 1회→ 10회/10개월 이상 참여시 만점)	15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결과  ※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
참고사항	○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 개설운영	

## 2)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평가 항목	배점 (40)	확인서류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중 -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정규직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40 35 30 25 20 15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
참고사항	○ 고용노동부에 선임 보고된 안전·보건관리자 자료 기준 - 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3) 안전보건 조직

평가 항목			배점 (20)	확인서류								
○ 안전보건 조직			0~20	안전보건 조직 현황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								
구분	평가 항목	점수										
1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30위 이내)	1.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 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 건업무 전담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20										
	2.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 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 전담직 원이 5명 이상인 경우	10										
1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30위 이외)	1.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 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 전담직 원이 3명 이상인 경우	20										
	2.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업무 전담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10										
2군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업무 전담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20										
	2.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10										
3군 ~ 4군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20										
	2.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10										
참고사항	○ 군별 분류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시공능력평가액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군</td> <td>1위~100위</td> </tr> <tr> <td>2군</td> <td>101위~300위</td> </tr> <tr> <td>3군</td> <td>301위~600위</td> </tr> <tr> <td>4군</td> <td>601위~1,000위</td> </tr> </tbody> </table>		구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군	1위~100위	2군	101위~300위	3군	301위~600위	4군	601위~1,000위
구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군	1위~100위											
2군	101위~300위											
3군	301위~600위											
4군	601위~1,000위											
		○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원 및 직원은 본사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										



##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평가 항목	배점 (50)	확인서류
<p>○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 1회</p> <p>※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25점 인정</p> <p>○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 2.5점/1회</p> <p>※ 사업주가 월 1개소 이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시에도 월 1회만 인정 (매월 1회→ 10회/10개월 이상 참여시 만점)</p>	<p>25</p> <p>25</p>	<p>제출서류 없음</p> <p>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결과</p> <p>※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p>
참고사항	○ 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 사업주 안전·보건교육'과정 개설·운영	

## 2) 안전·보건 조직 (50점)

평가 항목			배점 (50)	확인서류
○ 안전·보건 조직			0~50	안전보건 조직 현황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
구분	평가 항목	점수		
1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30위 이내)	1.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 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만을 전담하는 임원을 포함하여 안전·보 건업무 전담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50		
	2.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 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 전담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25		
1군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30위 이외)	1. 본사에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구성 되어 있고, 안전·보건업무 전담직 원이 3명 이상인 경우	50		
	2.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 업무 전담 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25		
2군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 건업무 전담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	50		
	2.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25		
3군 ~ 4군	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50		
	2.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직원이 1명 이상인 경우	25		
참고사항	○ 군별 분류			
	구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군	1위~100위		
	2군	101위~300위		
	3군	301위~600위		
4군	601위~1,000위			
○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원 및 직원은 본사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				

## 2. 가점 항목

##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여부

평가 항목	배점 (5)	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증을 받아 인증 유지중인 경우</li> <li>○ 안전공단에 인증 신청을 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 후 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이에 한정</li> </ul> </li> </ul>	5     2	제출서류 없음
참고사항	○ 인증유지·신청 등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별지 제1호서식]

##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결과

시평액 순위	군	토건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연번	대표이사				현장 관계자	
						행사명	현장명	일시	성명	성명	연락처
	(1)				1	(2)	(3)				
					2						
					3						
					4						
					5						
					6						
					7						
					8						
					9						
					10						
계									(4)회		

(1) 평가 대상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른 군(1-4군)별 분류 중 해당 군 표기, (2) 안전보건점검 또는 안전점검의 날로 구분하여 표기

(3) 안전보건점검 또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한 현장명 표기, (4) 대표이사가 참석한 횟수 표기

## &lt; 공지 사항 &gt;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상기의 내용(실적)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사업주 \_\_\_\_\_(인)

[별지 제2호서식]

###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해당 없을 경우 미제출)

시평액 순위	군	토건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연번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현황				
						현장명	성 명	선임기간	정규직	연락처
					1			(1)	(2)	
					2					
					3					
					4					
					5					
					6					
					.					
					.					
					.					
					.					
계									명	(3) %

(1)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근무일수 표기

(2) 정규직에 해당 할 경우 해당란에 "○" 으로 표기

(3) (정규직 안전관리자 수 / 선임 안전관리자 수) X 100

#### < 공지 사항 >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상기의 내용(실적)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사업주 \_\_\_\_\_(인)

[별지 제3호서식]

## 안전보건 조직 현황

시평액 순위	군	토건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명	본사 안전보건조직			본사 안전보건전담자 현황			
					전담조직 구성		안전보건 전담자수	연번	성명	소유한 자격 현황	연락처
					유	무					
					(*1)	(*1)		1		(*2)	
								2			
								3			
								4			
								5			
								6			
								7			
								.			
								.			
								.			

(\*1) 본사 안전보건전담 조직의 유무를 "o" 으로 표기

(\*2)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자가 보유한 자격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제10호 및 제11호를 제외한다) 및 별표 6의 기준으로 작성

## &lt; 공지 사항 &gt;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공단의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지표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함

상기의 내용(실적)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 .

사업주 \_\_\_\_\_(인)